

대외 무역대금의 인민폐결제 절차 및 필요서류

(2014. 12. 4)

북경사무소

□ 관련규정

- 대외무역인민폐결제시범관리방법(跨境贸易人民币结算试点管理办法)
- 대외무역인민폐결제시범관리방법실시세칙(跨境贸易人民币结算试点管理办法实施细则)
- 인민은행의 대외인민폐결제 확대 문제에 관한 통지(中国人民银行等部门关于扩大跨境贸易人民币结算试点有关问题的通知)

□ 내용

- 과거 상기 규정에 따라 인민폐 대외결제는 시범기업에 한하여 시범지역에 대해서만 허용되어 왔으나, '10년 6월(시범지역의 전국 확대), '13년 2월(시범기업 제한 폐지) 조치에 따라 사실상 중국내 인민폐 대외결제 자유화
-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노력으로 인민폐 대외결제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되며 다만 기업이 인민폐 대외결제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앞 신고 필요(기업의 거래은행이 인민은행 앞 신청)

□ 시스템 등록 및 인민폐 결제절차

- 최초거래시에는 인민은행의 인민폐 대외결제업무 시스템(RCPMIS) 등록 필요(기업의 거래은행이 신청 및 입력, 1영업일 소요)

- 실제 송금거래시 거래은행 앞 수출 또는 수입관련 서류 제출
(달러 결제와 동일 종류의 서류 필요)

□ 필요서류

<인민은행 인민폐 대외결제업무시스템 등록서류>

- 기업정보상황표
- 인민폐대외결제지급설명서
- 영업집조(정, 부분)
- 세무등기증(정, 부분)
- 조직기구대마증(정, 부분)
- 해관코드(海關編碼)
- 법인대표자 신분증
- 위임인 신분증
- 위임장

<송금관련 서류>

- 계약서
- 수출서류(면장 및 인보이스)
- 영수증 등

- 붙임 : 1. 기업정보상황표(인민은행 양식)
2. 인민폐대외결제지급설명서(인민은행 양식_수입대금 결제의 경우)